

議案檢討報告書

1. 發意 또는 提出者：大田廣域市 教育監
2. 件 名：大田廣域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
3. 案 件 要 旨：別 添 參 照
4. 檢 討 意 見：別 添 參 照

위 議案에 對한 檢討事項을 別添과 같이 報告합니다.

1995. 2.

文教·社會 委員會

專門委員 金 鎮 鎭



大田廣域市立學校 設置條例中 改正 條例案

檢 討 報 告 書

1995年 2月 日

文教・社會 委員會
專 門 委 員

大田廣域市立學校 設置 條例中 改正 條例案

檢 討 報 告

이 改正 條例案은 1995. 2. 2 大田廣域市 教育監으로부터 提出
되어 1995. 2. 9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.

1. 提 案 理 由

- . 教育法 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田廣域市立學校中
分校場 統·閉合에 따라 閉校되는 진잠國民學校 방성分校場의
名稱과 位置를 削除하고
- . 閉校되는 방성 分校場을 本校인 진잠國民學校에 統合하여 教
育의 質的向上을 圖謀코자 함.

2. 主 要 骨 子

- . 진잠國民學校 방성分校場의 名稱과 分校場의 位置 (大田廣域
市 儒城區 成北洞 188)를 削除 (별표 1의 4)

3. 檢 討 意 見

- . 本 案件은 儒城區 成北洞 588番地에 位置한 진잠國民學校 방성 分校場을 本校인 진잠國民學校에 統合코자 하는 事項으로써

그 主要內容을 報告드리면

- . 진잠國民學校 방성分校場은 1960年度에 設立되어 現在 3學級 34名의 學生과 4名의 教職員으로 運營되어온 學校로 앞으로

學生의 增加趨勢가 不透明하므로 教育의 質的向上을 위하여 本校인 진잠國民學校로 統合코자 함은 別다른 問題點은 없는 것으로 判斷되나

- . 本校로의 統合으로 인한 學生들의 登·下教에 불편함이 없도록 交通便宜 提供과 閉校되는 學校에 대해서는 賣却보다는

都市學生들이 農村를 理解할 수 있는 教育의 場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案등이 적극 檢討되어져야 할 것으로 思料됩니다.